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책사유별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10%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내용으로 개선(안 제6조)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 신설 등(안 제6조)

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 도서관장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 전가하는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도서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위탁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 제20조제2항)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의 이용에”를 “시민에게”로,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강당허가신청”을 “강당사용 허가신청”으로,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허가제한)”을 “(사용허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할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료 납부)”를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를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을 “철거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를 “사용자가”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u>공중의 이용에</u>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u>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시민에게</u> ----- ----- ----- <u>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u> ----- ----- -----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정의) ----- ----- <u>뜻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 서식에</u> 의한 강당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u>별지 제2호서식에</u> 따른 강당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지 제1호서식에</u> 따른-----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강당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④강당사용 허가신청-----있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제5조(사용료 면제) ① (생략)

②제1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
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료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후 사용개시 1
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 경우-----
---따른다. -----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한) -----
-----해당할 경우---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면제) ① (현행과 같
음)

②제1항-----

-----.

제6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
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사유로 사
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
이 불가능할 경우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료의 100%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약일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 사용료의 10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약일 3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 사용료의 80%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약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 사용료의 5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약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 ② (생략)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도서관 사용허가 시설물에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생략)

제7조(허가의 취소등) -----

-----변경 등-----
-----.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철거일-----

-----.

<삭 제>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관리자에

② 사용자가-----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2조(감독) ① -----

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27조 (생략)

-----연 1회-----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20]

소관 실·과		시립중앙도서관
입 안 자	관 장	백 승 해
	담 당	안 규 성
	담 당 자	류 정 숙 (480-4652)